

안경테표면처리센터(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규정에 의거 지역특화산업인 안경테 제조산업의 지원 육성을 위하여 안경테 표면처리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자격을 갖춘 기업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년 01월 15일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장

■ 건물 개요



위	치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166 (침산동)
규	모	지하1층~지상5층, 1개동 / 22실
구	성	임대공장, 관리실, 회의실, 폐수처리실 등
전 용 률 / 공 용 률		5 6 % / 4 4 %
대 지 면 적		2,474(m ²)
부 지 면 적		2,640(m ²)
연 면 적		6,930(m ²)
용 적 률 / 건 폐 율		2 4 1 . 6 3 % / 5 3 . 9 1 %
지 역 지 구		도 시 지 역 , 일 반 공 업 지 역

■ 층별 배치 현황

층 별		주요시설
지상층	5층	임대공장(5실)
	4층	임대공장(4실), 휴게실, 회의실, 샤워실
	3층	임대공장(5실)
	2층	임대공장(5실)
	1층	관리실, 임대공장(3실)
지하층	지하 1층	기계실, 전기실, 폐수처리실 등

■ 층별 임대료/관리비 현황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호실		계약	공용	전용	연 임대료	연 관리비 (1㎡ 1,517원)	연 사용료 합계 (원단위 절사)
		㎡	㎡	㎡			
1	201	400.85	175.7	225.15	14,103,620	7,297,080	21,400,700
2	202	315.34	138.22	177.12	11,094,990	5,740,440	16,835,430
3	204	304.95	133.67	171.28	10,729,290	5,551,320	16,280,610
4	205	284.22	124.58	159.64	10,000,040	5,174,040	15,174,080
5	403	304.95	133.67	171.28	10,729,290	5,551,320	16,280,610

■ 월 평균 임대료(전용률 : 56%)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구분	월 평균 임대료 (3.3㎡당)	월 평균 관리비 (3.3㎡당)	합계
전용면적 당	17,226	8,913	26,139
계약면적 당	9,676	5,006	14,682

■ 층별 단독 및 통합 호실 공고

※ 주의 : 입찰 전 반드시 사전 현장답사 및 호실별 현황 확인 필요

층별	호실(평)			
4층	403호 (약51.9평)			
2층	201호 (약68.2평)	202호 (약53.6평)	204호 (약51.9평)	205호 (약48.3평)

- 호실별 위치

<2층>



201호



20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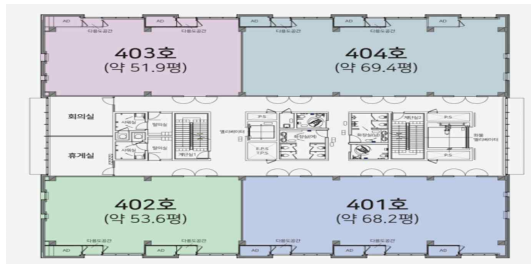
204호



205호



<4층>



403호



■ 입찰(입주)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입찰대상물의 사용 목적에 따라 입주 가능한 자로서 사업자 등록과 직영할 능력이 있고 입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등록을 완료한 자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에 ‘**안경테 제조**’ 명시
- 입주대상업종 : **안경 및 안경렌즈 등 관련 제조 전업종**
 - ※ 입주기업 적격성 여부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제조공정도, 설비계획 등 포함) 등 자료 검토를 통해 판단
 - ※ 낙찰자 선정 이후에도 안경 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안경제조 공정을 운영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 입주가 취소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안경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이거나 안경제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안경테 표면처리분야(코팅) 사업장의 경우 폐수처리시설 운영기준 준수
 - ※ 고농도 폐수 : 고농도 폐수는 폐수처리시설 유입 불가(배출허용기준 참조)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불가(붙임 7 참조)
 - 코팅 및 세척제 등의 원액, 탈지, 산세, 코팅, 도장 과정 중 발생하는 폐수 중 고농도 폐수의 경우 별도 저장 후 위탁 처리 필수(폐수처리시설 유입 불가)
- 중앙정부, 지자체의 대기, 폐수 등 각종 환경 관련 인·허가 사항을 이행 가능한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
-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로서 『전대 계약서』 및 『전대계약 특수조건』을 수락한 자

■ 입주제한업종

- 안경 및 안경렌즈 관련 제조 외의 타 산업분야
- 폐수를 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는 업종 및 기업

■ 입주관리 방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폐수처리시설 운영>

폐수처리시설은 ‘폐수직접배출자’인 입주기업이 별도 ‘공동폐수처리시설(공동방지시설) 운영 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체 선출한 ‘협의회 대표자’ 명의로 운영신고절차 진행 후, 폐수처리시설 운영 전문업체와 계약 등을 통해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비용과 책임은 협의회에서 제정한 자체규약에 의거하여 입주기업이 분담

- 관련 법조항 : 『물환경보전법』 제35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

- 폐수처리시설 운영 당사자 : 입주기업 및 협의회

※ 『물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관리 및 운영 가능

1. 모든 입주기업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 또는 신고’ 진행 필수

관련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등

2. 협의회 대표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는 관련법에 근거한 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련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35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 등

<폐수처리시설 운영 전문업체 계약 시 주의사항>

1. 계약기간 : 이전 계약기간 종료 후, 신규 계약 시 세부 계약기간은 협의회 내부 협의를 통해 결정 가능

- 협의회 구성

· 협의회 구성 요건 : 최초의 협의회는 센터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기업 2개사 이상 입주 시에 구성 및 운영되며 최초 성립된 이후에는 지속 운영

· 가입대상 : 센터 폐수처리시설 운영 전(全)기업 대표자

- 협의회 대표자 선출 : 협의회 구성 후 협의회 자체 선출

- 협의회 구성원은 협의회 자체규약 및 센터 사무편람 등 관련 관리방침 명확히 준수

※ 상기 규약은 협의회 구성 후 협의회 자체 제정

- 기업별 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 및 폐수처리비용은 폐수배출량(상수도 사용량 비례 부과)에 따라 분담

※ 세부 분담방식은 협의회 자체규약에 따름

- 폐수처리 오염물질 농도 및 처리효율

(단위: mg / ℓ)

구 분	PH (수소이온농도)	TOC (총유기탄소)	SS (부유물질량)	N-H (노말핵산)	ABS (음이온계면활성)
원 수	7	280	100	10	5
배출허용기준(“나”지역)	5.8 ~ 8.6	75	120	5	5
방 류 수(설계기준)	6 ~ 7	30	20	3	3

※ 처리방법 : 화학적 처리

※ 센터 폐수처리 설계용량 : 195톤 / 1일

- 입주기업은 원활한 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원수유입기준’, ‘배출허용기준’, ‘방류수기준’ 반드시 준수
 - 기업별 폐수 불시점검 실시 및 위반기업 제재조치
 - ※ 입주기업이 자체 방지시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시에는 유입 및 배출 폐수를 수시로 채취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함

<대기시설 설치>

- 공장 내 대기배출을 위한 대기시설은 입주기업 자체 비용부담을 통해 설치 및 관리
 - 대기시설 설치허용지역 : 옥상(호실별 지정된 위치에 설치 가능)
 - ※ 건물 1층 및 주변 설치 불가
 - ※ 대기시설 설치 시, **제곱미터당 하중**을 고려하여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대기배출덕트는 호실별 지정 위치에만 설치 가능
 - ※ 상세 정보 붙임4 참고

<주차>

- 주차는 **호실별 1대로 제한**하며 이용 규정에 동의한 기업을 대상으로 주차 등록
 - (예시) 101 ~ 102호(2개실) 계약 : 2대 / 301 ~ 305호(5개실) 계약 : 5대
- 지정 차량 외 주차 : 조야로 인근(도보 5분) 주차장 및 인근 주차공간 활용

▣ 환경문제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 관련법령 :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협의회 자체규약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분담
 - 부과된 과태료는 ‘관련법령’ 및 ‘자체규약’에 따라 공동폐수처리시설 이용 기업이 분담
 - ※ **관련법령 및 자체규약이 충돌할 경우, 관련법령 우선 적용**
 - 허용기준 초과 배출로 인한 과태료 및 제재조치 발생 시 ‘관련법령’ 및 ‘협의회 자체규약’ (협의회 규약 내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및 벌금에 대한 분담명세 명시 등)에 따른 처리 및 분담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불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 및 제재조치 발생 시 ‘관련법령’ 및 ‘협의회 자체규약’에 따른 처리 및 분담
 - 이외 기타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법령’ 및 ‘협의회 자체규약’에 따른 처리 및 분담
 - ※ 협의회 자체규약 및 폐수처리시설 이용 서약서 내용 준수
- 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련 내용은 ‘센터 사무편람’ 및 ‘협의회 자체규약’을 따르며 상기 운영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협의회 및 진흥원과 협의 후 변경 가능

장비하중 제한

- 입주기업 장비의 이전 및 도입은 각 층별 설계하중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 설치 전 진흥원과 장비하중 관련 사전 협의 필수
- 층별 하중 정보

구 분	1 ~ 4층	5층	옥 상
하 중	600kgf/㎡	1,200kgf/㎡	500kgf/㎡
	1,980kgf/평	3,960kgf/평	1,650kgf/평

- 옥상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는 하중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하중 초과 시 하중 분산을 위한 추가 설비(에이치빔 등) 설치 필수
- 시설 설치공간 바닥은 콘크리트 매트, 방진고무 매트 및 방진스프링 필수 설치 단, 진흥원과 협의하여 설치가 불필요한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 옥상에 설치되는 설비는 사전에 진흥원과 설치위치 등을 협의 후 입주기업 부담으로 설치 진행
 - ※ 진흥원과 사전 협의하지 아니하고 초과하중장비 도입 시, 강제 퇴거조치 시행, 단순 실수에 의한 초과하중장비 도입 시, 해당장비 퇴출 조치 시행(입주자 안전 고려)

입주계약 및 입주시기

- ※ 전대인(진흥원) 귀책사유의 경우에는 예외 적용

입주계약	입주 승인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입주시기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 사용개시일은 입주와 동시에 시작되며,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90일이 되는 날부터 자동으로 사용개시

전대범위

- 지상 1 ~ 5층(세부 위치는 층별 현황 참조)
- 1개 기업당 2실 이상 복수 신청 가능

전대기간

- 최대 전대기간 : 10년
- 1차 계약기간 : 전대계약일로부터 1년(1차 계약 종료 후 연장 가능)
- 입주 부과금의 3개월 이상 연체 및 기타 센터입주방침 위배 시『전대 계약서 및 전대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중도해지 및 퇴거조치 가능
- 전대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준수

■ 입주부담금

- 사용료(임대료 및 관리비) : 계약면적 기준 (계약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보증금 : 연간 사용료의 50%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 보증금 납부 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기한 :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 수도 및 전기사용료(전용 + 공용면적 사용분)는 별도 부과

■ 입찰일정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	입찰서 제출처
1	2025. 01. 15.(수), 10:00 ~ 2025. 01. 22.(수), 18:00	전자자산처분시스템 (http://www.onbid.co.kr)
2	개찰일시 2025. 01. 23.(목), 10:00	개찰 장소 안경테표면처리센터 입찰담당자 PC
3	낙찰예정자(1순위·2순위) 서류 제출 기한 2025. 01. 31.(금)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등 발주기관 요청서류
4	낙찰자 선정 기한 2025. 02. 07.(금)	비고 일정 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낙찰자 적격여부 판단 후 낙찰자 선정

※ 낙찰예정자 대상 제출서류 개별 요청 예정

■ 입찰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개별입찰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
-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
※ 별첨 : 온비드 사용 매뉴얼 참조
-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음
- 등록 전 현장 확인 요망,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귀속(현장설명 참조)

■ 현장설명

-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전 현장답사 및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전대재산의 현장 및 운영·행정상의 제한사항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운영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공고를 이용한 전자입찰서로 제출
-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 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입찰서는 입찰 마감 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
 - ※ 입찰서 제출 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 온비드]-[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
-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 불필요
-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의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때에는 모두 무효 처리,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 제출된 입찰서의 변경이나 취소 불가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37조 (입찰보증금),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및 시행규칙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5%) 이상**의 현금 또는 입금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 시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 부담
-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
- 입찰보증금 납부 시 **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입금**하여야 함

<비정상 처리 예시>

1.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2. 입찰보증금액보다 적게 입금한 경우
3. 입찰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되며, **계약완료 후** 계약보증금을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반환
- 유찰자(입찰 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개찰 완료 후**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공제
 - ※ 단, 차순위 낙찰예정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 선정 완료 후** 입찰보증금을 이자 없이 반환

■ 낙찰자 결정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2항에 따른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온비드”에서 낙찰자로 자동 결정
- 최고가격 입찰자를 1순위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낙찰예정자가 입찰참가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입찰가격이 높은 순서대로 후 순위자의 입찰참가자격을 검토하여 낙찰예정자로 결정
-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의 규정에 의거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 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 입찰자 간에 서로 논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게재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에 고발될 수 있음
- 낙찰자 선정 이후에도 사용허가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본 입찰 및 계약에 허위 또는 부정행위로 참가한 경우 낙찰 취소가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상기 사유 등으로 낙찰 후 취소 시 재공고 개시

■ 계약체결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이 자동 대체된 계약보증금)**을 **이자 없이 반환**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진흥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 사용료

-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진흥원에서 고지하는 사용료와 부가가치세(사용료의 10%) 전액을 계약 시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에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됨
※ 최초 사용료 납부기한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에 의거,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보증금(연간 사용료의 50%)을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보험증권을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50만원 초과> 3월 이내 2회 분납
 <100만원 초과> 6월 이내 4회 분납
 <200만원 초과> 12월 이내 12회 분납

- 최초연도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된다.**

- 2차연도 이후의 사용료

- 사용료 산출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제3항,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에 따라 사용료 산정 및 연단위 계약 연장
- 사용료 산출산식(최초입찰 후 2년 ~ 5년, 매년 연장 시(2년, 3년, 4년, 5년))

$$[(\text{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times (\text{제31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div (\text{제31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 사용료 산출산식(5년 도래 후, 최초 갱신에 따른 6년 ~ 10년)

다음 2가지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계약

-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 2)
$$[(\text{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대부료*}) \times (\text{제31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div (\text{제31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대부료 :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

▣ 낙찰자 제출서류 및 구비사항

<낙찰자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재무제표(2023년도, 2024년도 기준) 1부.
3.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5. 본 입찰 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9. 영업배상보험증권 및 화재보험증권 각 1부. (※전대 계약 체결 시 별도 제출일 통보)
10. 이행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사용료 분납 시) - 연간 사용료의 50%

■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 무효), 온비드 상의 회원 약관과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위배한 입찰은 무효

■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및 “발주기관” 전산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입찰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할 수도 있음

■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위 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은 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별도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사항,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 공유재산사용허가입찰유의서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기타 회계 예규 등을 따름
- 본 입찰에 있어 시설 내에 유사 크기의 물건이 많은 관계로 반드시 현장 및 제반여건 등을 사전조사 후 입찰참가요망, 이를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본 공유재산 전대와 관련한 사업의 필요한 각종 허가 절차 및 사업의 손익발생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책임이므로 모든 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수
- 본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양수는 일체 불허하며, 위반 시 전대 계약의 취소를 받게 되고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이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발주기관이 책임지지 않음
- 전차인의 전대 재산 사용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제반 인가, 허가, 등록 또는 승인의 취득은 전차인의 단독 책임으로 함
-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전기, 수도, 가스, 폐기물 수수료 등을 사용량(기간)에 따라 매월 정산하여야 함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해당하는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문의 요망

▣ 추가 정보에 관한 사항

- 온비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센터 (<http://www.onbid.co.kr>)로 문의(☎1588-5321 : 온비드사업부)
- 입찰 관련 문의(☎053-350-7868 : 안경테표면처리센터)
- 입찰에 관한 진행 상황 안내 (온비드)
 - 입찰서 제출 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내역]-[상세보기]
 - 입찰보증금납부 여부: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내역]-[물건명 클릭]
 - 입찰결과: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내역]-[입찰결과]
- ※ 공고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ia.or.kr>)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에 공고 중

- 붙임 : 1. 입찰대상 및 예정가격 1부
2. 전대계약서 및 전대계약 특수조건 각 1부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4. 호실별 시설 설치 상세 기준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관련 법조항 1부
 7.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1부
 8. 공동방지지설 운영 제출서류 1부.
 9. 센터방문약도 1부.

2025년 01월 15일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장